#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66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이헌승·김선교·김도읍

강선영 · 서일준 · 서지영

김승수 · 박덕흠 · 고동진

유영하 · 정성국 · 윤상현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각 지자체 소속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에 소 요된 비용은 3,927억원에 이르고 있음.

노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에 따라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령사회가 도래되면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도시철도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6조).

법률 제 호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6條(敬老優待) ① (생 략)	第26條(敬老優待) ① (현행과 같
	<u> </u>
<u> &lt;신 설&gt;</u>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노인
	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
	<u>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u>
	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
	원한다.
<u>②</u> · <u>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